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39호 2023. 9. 20.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71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3-7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6
- 정선군 고시 제2023-76호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고시.....8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068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3-1084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14

- 정선군 공고 제2023-1085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6
- 정선군 공고 제2023-1086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53
- 정선군 공고 제2023-1087호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61
- 정선군 공고 제2023-1104호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71
- 정선군 공고 제2023-1105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입법예고.....75
- 정선군 공고 제2023 -1115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
고.....8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71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3-353호(2013. 9. 13.)로 최초 결정된 고한사북 도시지역 어린이공원 제11호(동탄어린이공원 1) 및 제12호(동탄어린이공원 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정책에 따른 공원 일몰제에 대비, 사북읍 사북리 일원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나. 위 치 : 동탄어린이공원1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동탄어린이공원2 (사북읍 사북리 산153-32번지)

다.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

라.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1. 고한·사북 도시지역 제11호 어린이공원(동탄어린이공원1)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공원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동탄어린이 공원1	어린이 공 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1,540.0	-	1,540.0	강고 제353호 (2013.09.13)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최초) 내용	결정(최초) 사유
①	동탄어린이 공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면 적 : 1,54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통해 주거 환경의 쾌적성 향상

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1) 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공원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①	동탄어린이 공원1	어린이 공 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1,540.0	865.0	-	

2) 공원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구분	면적(m ²)		건축물		비고	
	시설면적(m ²)	구성비(%)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합계	1,540.0	100.0	-	-		
시 설 용 지	소계	865.0	56.2	-	-	
	도로및광장	412.0	26.8	-	-	
	휴양시설	32.0	2.1	-	-	
	유흥시설	376.0	24.4	-	-	
	운동시설	45.0	2.9	-	-	
녹지	675.0	43.8	-	-		

3)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번호	면적(m ²)		건축물		비고
		시설면적(m ²)	구성비(%)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공원		1,540.0	100.0	-	-	
시설계		865.0	56.2	-	-	
도로 및 광장	도로	-	61.0	-	-	
	광장	1	351.0	-	-	
	소계	-	412.0	26.8	-	
휴양 시설	쉼터1	2	16.0	-	-	
	쉼터2	3	16.0	-	-	
	소계	-	32.0	2.1	-	
유희 시설	어린이놀이터	4	376.0	-	-	
	소계	-	376.0	24.4	-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	5	45.0	-	-	
	소계	-	45.0	2.9	-	
녹지	-	675.0	43.8	-	-	

4)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37.7	61.0	-	-	-	
소로	3	1	3.0	2.7	8.0	진입로	북측구역계	소로3-2	
소로	3	2	1.5	35.0	53.0	연결로	광장	광장	

2. 고한·사북 도시지역 제12호 어린이공원(동탄어린이공원2)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공원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②	동탄어린이 공원2	어린이 공 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32번지	1,715.0	-	1,715.0	강고 제353호 (2013.09.13)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최초) 내용	결정(최초) 사유
②	동탄어린이 공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 면 적 : 1,7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통해 주거 환경의 쾌적성 향상

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1) 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공원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②	동탄어린이 공원2	어린이 공 원	사북읍 사북리 산153-32번지	1,715.0	924.0	-	

2) 공원 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구분	면적(㎡)		건축물		비고	
	시설면적(㎡)	구성비(%)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715.0	100.0	-	-		
시 설 용 지	소계	924.0	53.9	-	-	
	도로및광장	397.0	23.1	-	-	
	휴양시설	32.0	1.9	-	-	
	유희시설	271.0	15.8	-	-	
	운동시설	224.0	13.1	-	-	
녹지	791.0	46.1	-	-		

3)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번호	면적(m ²)		건축물		비고
		시설면적(m ²)	구성비(%)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공원		1,715.0	100.0	-	-	
시설계		924.0	53.9	-	-	
도로 및 광장	도로	-	188.0	-	-	
	진입광장	1	84.0	-	-	
	중앙광장	2	125.0	-	-	
	소계	-	397.0	23.1	-	
휴양 시설	쉼터1	3	16.0	-	-	
	쉼터2	4	16.0	-	-	
	소계	-	32.0	1.9	-	
유희 시설	어린이놀이터	5	271.0	-	-	
	소계	-	271.0	15.8	-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	6	32.0	-	-	
	배드민턴장	7	192.0	-	-	
	소계	-	224.0	13.1	-	
녹지	-	791.0	46.1	-	-	

4) 도로 결정 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124.5	188.0	-	-	-	
소로	3	1	2.0	2.5	5.0	진입로	남측구역계	소로3-2	
소로	3	2	1.5	92.0	138.0	연결로	진입광장	중앙광장	
소로	3	3	1.5	30.0	45.0	연결로	중앙광장	진입광장	

정선군 고시 제2023-72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85-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되어 강원도 고시 제2021-138호(2021. 4. 2.)로 변경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승강장 증축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57-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승강장 증축)
 -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증축(승강장)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A=4,824㎡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류장 A=4,824㎡(구역면적) <input type="checkbox"/> 금회시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강장 증축 A=81.60㎡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
 -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2023. 10.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정선읍 북실리	618-13	전	147	14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757-3	대	1,493	1,49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757-4	도	273	273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757-5	대	1,316	1,31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757-7	대	1,595	1,59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5필지		4,824	4,824					

정선군 고시 제2023-76호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정 선 군 수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경상북도 영천시 간 남북고속도로(남북 9축) 경유 인접 시·군은 상호교류 협력 및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구 ~ 영천 간 「남북9축 고속 도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 1. 자치단체 간 공동관심사인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 방안
- 2. 시·군정 각 분야별 시책의 공조
- 3. 기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양구 ~ 영천 간 남북9축 고속도로 경유 시·군으로 구성한다.

② 현재 계획상 고속도로 경유 시·군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경상북도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영천시로 구성하며, 계획의 변경 시 경유 시·군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4조(운영) ① 협의회는 양구군수, 인제군수, 홍천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영월군수, 봉화군수, 영양군수, 청송군수, 영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하며,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
-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6조(사무처리) ① 협의회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 위원은 각 시·군의 기획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제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시·군과 협의하여 협의 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협의회회의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는 회의록 등 의결·활동 사항을 작성 관리 한다.

제9조(협의사항 처리 등)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 경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상호간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규약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약 이외에 사항은 협의회회의 합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1068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8호(2023. 8. 24.)로 최초 결정된 정선 군관리계획 (전기 공급설비:송전선로)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 2) 명 칭 : 강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동강지중화), 수직구 #2, #3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input type="checkbox"/> 4구간 • 시설연장 L=3.501km • 구역면적 A=111,952㎡ <input type="checkbox"/> 5구간 • 시설연장 L=18.1km (가공 14.113km, 지중 :3.987km) • 구역면적 A=514,838㎡ <input type="checkbox"/> 6구간 • 시설연장 L=5.014km • 구역면적 A=184,691㎡	<input type="checkbox"/> 동강지중화 구간 중 수직구 #2, #3 구역면적 A=8,051㎡ - 수직구 A=5,169㎡ - 진입로 A=2,677㎡ - 터널부지 A=205㎡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6. 30.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3. 9. 8. ~ 2023. 9. 22.)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수직구 구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굴암리	472-6	전	258	97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 94-1206	김형수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2	정선읍 굴암리	472-2	전	2,541	1,8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3-1	김남옥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3	정선읍 굴암리	산226	임	9,917	366	국	환경부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4	정선읍 굴암리	470-1	대	509	50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470-1	이한우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5	정선읍 굴암리	470-3	전	1,583	1,54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한우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6	정선읍 굴암리	470-2	전	202	20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한우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7	정선읍 굴암리	471	전	2,816	370	국	환경부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8	정선읍 굴암리	467-1	구	637	198	국	국토 교통부			수직구 (지상권 또는 소유권)
계				18,463	5,169					

● 토지조서(진입로 구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굴암리	472-6	전	258	8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94-1206	김형수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2	정선읍 굴암리	470-3	전	1,583	12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한우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3	정선읍 굴암리	469-1	도	230	21	국	국토 교통부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4	정선읍 굴암리	469-2	잡	200	1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주식회 사케이 티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5	정선읍 굴암리	472-2	전	2,541	3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3-1	김남옥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6	정선읍 굴암리	472-8	전	1,108	569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 94-1206	김형수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7	정선읍 굴암리	472-3	도	403	93	공	정선군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8	정선읍 굴암리	469	전	1,377	75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한우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9	정선읍 굴암리	469-3	도	1,081	601	공	정선군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10	정선읍 굴암리	467-1	구	637	15	국	국토 교통부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11	정선읍 굴암리	467-3	도	140	71	국	국토 교통부			진입도로 (지상권 또는 소유권)
계				9,558	2,677					

● 토지조서(터널구간)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굴암리	472-6	전	258	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94-1206	김형수			터널부지 (지상권 또는 소유권)
2	정선읍 굴암리	산226	임	9,917	48	국	환경부			터널부지 (지상권 또는 소유권)
3	정선읍 굴암리	472-2	전	2,541	8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73-1	김남옥			터널부지 (지상권 또는 소유권)
4	정선읍 굴암리	469	전	1,377	4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259	이한우			터널부지 (지상권 또는 소유권)
5	정선읍 굴암리	469-1	전	230	11	국	국토 교통부			터널부지 (지상권 또는 소유권)
6	정선읍 굴암리	467-3	도	140	13	국	국토 교통부			터널부지 (지상권 또는 소유권)
계				14,463	205					

정선군 공고 제2023-1084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도모하고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 운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용 등을 명문화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안 제20조)
 -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정선군 관할 내에서만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안 제26조)
 - 운행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 로 구체화

-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7조)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8조)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내용 신설(안 제31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8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2층 교통관리사업소
- 전 화 : 033 - 560 - 2465
- F A X : 033 - 562 - 6400
- e-mail : wjddud1235@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4조, 제5조, 제17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③ 제 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의 수립 시 법 제 7조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 를 “군수” 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저상버스 도입 계획)” 을 “(저상버스 도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정비율” 을 “3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 를 “제18조” 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정선군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각 호의 이용자는 제26조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통약자가 정선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정선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에 따른 보장구” 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을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로, “어려운 사람” 을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17조” 를 “제20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을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를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로, “별지 제16호의2 서식” 을 “별지 제16호의2서식”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을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으로, “장애등급” 을 “장애인정, 장애정도” 로, “소견이” 를 “구체적 내용이”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 을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제4항 중 “대해” 를 “대하여” 로, “접수일 부터” 를 “접수일부터” 로,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4항” 을 “제21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람 :” 을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로, “보장구 지원” 을 “보조기기 지원” 으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9조” 를 “제2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 및 제19조” 를 “제21조 및 제22조”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9조” 를 “제22조” 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제1항제2호” 를 “제18조제1항제2호” 로, “제16조제1항” 을 “제19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중전의 제22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을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으로, “시내버스요금” 을 “농어촌버스 요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제1호” 를 “제18조제1항제1호” 로, “제16조제1항” 을 “제19조제1항” 으로, “차량 :” 을 “차량:”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관외요금 :” 을 “관외요금:” 으로, “2배 이내” 를 “2배” 로 한다.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제26조(중전의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 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 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 을 “안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제30조(중전의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지원센터” 를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 로,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위하여” 로, “위탁” 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⑥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최근 10년 이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동지원 센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계속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탁사를 선정 하도록 한다. 이 밖에 수탁사 선정 자격 변경 시에는 별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29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2조(중전의 제26조)제3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34조(중전의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u>조례</u>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적용범위) ----- ----- ----- <u>조례</u>에 <u>선</u> -----.</p>
<p><신 설></p>	<p>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p>

- 입 및 운영
-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 ③ 제 1항에 따른 증진 계획의 수립 시 법 제 7조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 소속으로 정선군 교통약자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군수 -----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제5조 ~ 제12조 (생략)

제13조(저상버스 도입 계획) ① (생략)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 (생략)

<신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생략)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4조 (현행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5조(저상버스 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3분의 1 이상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현행과 같음)

② -----

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

고려하여 -----
--.

제1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8조-----

제2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
----- .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정선군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65세 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이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 설>

<신 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각 호의 이용자는 제26조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통약자가 정선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정선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

2. -----
-----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 어
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20조-----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
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
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
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
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

② -----
----- 별지 제1호서식-----

-----.

1. -----

가. -----
----- 사람: 「장
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

가. -----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

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
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
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
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
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
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
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
단서 또는 소견서

3. (생 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
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
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

--- 별지 제16호의2서식-

나. ----- 사람: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장애인정, 장애
정도-----

----- 구체적 내용이 -

3.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

④ -----
- 대하여 -----
---- 접수일부터 -----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 별지 제2호서식-----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21조제4항-----

-----.

1. -----
----- 사람: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
----- 보조기기 지원 -----

제2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
----- 제22조-----

-----.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제2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 ① (생략)

② -----
----- 제21조 및 제22조-----
---. -----
제22조-----
-----.

제2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제18조제1항제2호-----
----- 제19조제1항-----

-----.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나. 관외요금 :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② -----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농어촌버스 요금 -----

2. 제18조제1항제1호-----
----- 제19조제1항-----

----- 차량: -----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

2배 이내

③ (생 략)

제2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2배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
---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군,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제천시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지원하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

<신 설>

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 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제2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4. 5. (생략)
- <신설>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 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
안전 --
- 4. 5. (현행과 같음)
- 6.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신 설>

6. (생 략)

제2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제2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의 수납
-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신 설>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관한 통계 관리

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0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 위하여 -----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
-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민간단체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 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신 설>

④ (생략)

<신 설>

<신 설>

<삭 제>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⑥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최근 10년 이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동지원 센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계속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탁사를 선정 하도록 한다. 이 밖에 수탁사 선정 자격 변경 시에는 별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신 설>

제31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29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 략)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
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
해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27조 (생 략)

제2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
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
영하도록 한다.

<신 설>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하여 ---
-----.

제33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3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
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3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
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
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⑩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서식)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구분					
		신 설	○	강 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교통행정팀장 신지영, 주무관 정영훈						
4. 근거법령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4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관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정선군 심한장애자 등록현황 : 1,273명 ○ 65세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대상자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규제존속기한	○ 상위법 및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인한 조례·규칙 개정시까지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제2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교통 약자는 정선군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 로 한정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각 호의 이용자는 제26조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통약자가 정선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정선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대상 자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p>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p>	<p>제2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p> <p>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p> <p>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p> <p>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p> <p>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p>
--------------------------------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필요성	<p>제2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용대상자 한정 ○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제공이 필요하므로 이용대상자 한정으로 최선의 이동서비스 제공 <p>제28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 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함. ○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질서있고 안전한 이동권 제공
2. 규제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규제로 다른 별도 규제대안 검토 불필요 ○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 불가능, 조례 위임사항 미제정으로 이용자 혼란 및 불편 발생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3. 비용과 편익분석/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
4. 경쟁제한적 규제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5. 규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자치법규 정비 및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규제 대상 없음
6.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진행예정 : 2023. 9. 7 ~ 9. 26(20일간)
7. 규제집행의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신뢰도 향상
8. 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및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규제의 신설·강화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정선군 공고 제2023-1085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관내 화장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관외 화장장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경감을 주고자 함.

2.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3. 주요내용

- 관외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 관내 화장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관외 화장시설 사용시 사용료 지원
-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안 제2조)
 - 조례 개정 이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일(24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국 복지과
- 2) 전화: 033-560-2975
- 3) 팩스: 033-560-2588
- 4) E-mail : mh8283@korea.kr
- 5)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용료 지원) ① 군수는 공설 화장시설의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정선군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 할 경우, 사용료 실비(實費)에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3에 따라 사망자가 정선군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9조의2(사용료 지원) ① 군수는 <u>공설화장시설의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정선군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실비(實費)에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3에 따라 사망자가 정선군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 <u>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로 한다.</u></p>

참고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 화장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 화장 시설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 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3-1086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료 지원” 신설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3. 주요내용

- 사용료 지원 조례 조문 신설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 사용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별지) 제출
-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신설(제13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일(24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국 복지과
- 2) 전화: 033-560-2975
- 3) 팩스: 033-560-2588
- 4) E-mail : mh8283@korea.kr
- 5)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 지원)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사용료 지원)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지급은행	은행	계 좌 번 호			
사 망 자 화장내역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사 망 일	. . .	신 청 인 과 의 관 계	신청인의 ()		
	화 장 일	. . .	화 장 장 소			
신청금액		원				
※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div>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div>						
정 선 군 수 귀 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 화장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 화장 시설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 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조례 제정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등의 처리)
 -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공영장례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영장례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공영장례 기반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영장례 업무위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결정자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5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국 복지과
- 2) 전화: 033-560-2975
- 3) 팩스: 033-560-2588
- 4) E-mail : mh8283@korea.kr
- 5)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정선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 가. 미성년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수료 없음
	2. 장제비용 지출 서류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시·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준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 삭제 <2018. 6. 20.>
 4. 삭제 <2018. 6. 20.>
-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6. 20.>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 화장· 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3-1104호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 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정 선 군 수

1. 폐지사유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1987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인회계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21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회계과
- 전 화 : 033 - 560 - 2271
- 팩 스 : 033 - 560 - 2272
- 전자우편 : khee337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폐지안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 폐지안으로 비용추계 없음

4. 작성자

회계과장 이 차 원

정선군 공고 제2023-1105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사유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규칙명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된 교통관리사업소의 회계관직을 추가하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관련 상위 법령 변경(제1조, 제2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상위법 적용 조항 변경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추가(별표2)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제1관서에 교통관리사업소를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별표5)

-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춘 조문 정비 및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21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회계과

○ 전 화 : 033 - 560 - 2271

○ 팩 스 : 033 - 560 - 2272

○ 전자우편 : khee3372@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으로,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를 “계약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으로 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본문 중 “전결규칙의 규정에 의한다”를 “전결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1조제1항”을 “훈령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33조”를 “훈령 제103조”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칙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생략)</p> <p>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p> <p>1. <u>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u></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른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 --- 계약업무---</u>-----.</p> <p>1. <u>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u></p>

현행	개정안
<p>다.</p> <p>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u>전결규칙의 규정</u>에 의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규칙 제21조제1항</u>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u>의하여</u>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생략) <p>② (생략)</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u>규칙 제22조제2항</u>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u>의한다</u>.</p>	<p>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 ----- ----- -- <u>전결규칙에 따른다</u>. ----- ----- -----.</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u>훈령 제11조 제1항</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따라</u> ----- --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u>훈령 제12조제1항</u>----- ----- ----- <u>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② <u>규칙 제22조제3항</u>에 따라 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u>의한다</u>.</p>	<p>② <u>훈령 제12조제2항</u>----- ----- ----- <u>따른다</u>.</p>
<p>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p>	<p>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p>
<p>① <u>규칙 제97조</u>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p>	<p>① <u>훈령 제77조</u>-----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u>규칙 제133조</u>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u>훈령 제103조</u>-----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u>규칙 제135조제1항</u>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p>	<p>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u>훈령 제105조제1항</u> ----- ----- ----- -----.</p>

< 별표 2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p>1. 제1관서 가. 보건소 나. 농업기술센터 다. 상하수도사업소 라. 교통관리사업소</p> <p>2. 읍·면 가.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나.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다.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마.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바. 남면 행정복지센터 사. 여량면 행정복지센터 아.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자. 임계면 행정복지센터</p>	<p>1. 보건소 고한사복지소 2. 신동읍 함백출장소</p>

< 별표 5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기획관)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합의 대상임.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 -1115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개정)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다른 조례와 관계 규정을 통한 우선순위 명시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지방보조금 관련 부서장으로 함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안 제11조)

-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심의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심의
-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14조)

-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마련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심의참여 회피·해촉 요건 근거 마련

마. 위원회 회의(안 제17조)

-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 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하고,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
- 회의를 개최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바. 간사, 회의록 비치

- 개정안에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함

3. 의견제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화)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기획관실

- 연락처 : 전화(033-560-2239), 팩스(033-560-2592)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관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2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2.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②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지방보조금 부서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중전의 제13조)제4항 중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를 “위원회의 심의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2조 ~ 제8조 (생략)</p> <p>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u>총무행정관</u></p>	<p>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 ~ 제9조 (현행 제2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p>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 ----- -.</p> <p>1. <u>당연직 위원 :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 또는 군수가</u></p>

2. 복지과장

3.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 바.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 (생략)

<신설>

지정한 지방보조금 부서장

<삭제>

2. --- 각목-----

가. ~ 바.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2.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 ②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

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1조 · 제12조 (생략)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
--- 위원회의 심의 및 -----
-----.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

제14조 · 제15조 (생략)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
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
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 제20조 (생략)

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삭제>

<삭제>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
터 제20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